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09월 1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 사항 반영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”을 “의정운영공통
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(지원 등)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
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지원하는
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 등) 의장은 제4조의 교섭 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의정운영공통경비</u>에서 필요 <u>한 사업비 등을</u> 지원하고,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</p>	<p>제5조(지원 등) ----- ----- ----- <u>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</u> <u>업무추진비를</u> ----- -----.</p>